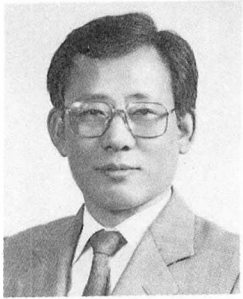


## 종합위험관리기관으로 개편돼야



김 병 기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장·동국대 교수)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설립된지도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화보협회가 설립된 직접적인 동기는 1972년 시민회관의 대화재로서, 공연장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시설은 개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공중의 것이니, 그 시설을 특정기관으로 하여금 점검케 하고,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하여 1973년 2월 6일 법률 제2482호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 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화보협회가 업

무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1973년 설립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의 규모는 5조 4천억원, 1인당 GNP는 미화 395불, 연간 손해보험료의 수입은 351억원에 불과하였다.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오늘날에는 GNP 207조억원(1991년), 1인당 GNP는 7천불에 이르렀고 손해보험료의 연간 규모는 24조억원이나 되는 보험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경제 발전은 오늘날 대내적으로는 정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와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쟁 체제를 요구하게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시장의 개방화·국제화를 급속히 진행시키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화보협회도 금융 기관 인수 물건과 같은 풀(pool) 조건의 인수 업무를 하지 않게 되어 보험 업무가 축소되었다.

화보협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일명 화보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 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예방, ② 신속한 재해복구, ③ 인명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④ 이를 통한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화보협회의 주요 업무로서 동 법 제11조에서 ① 화재 예방, ② 소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③ 관련 연구 및 계몽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보협회의 주업무는 보험보다도 화재 예방 등 방재가 주업무로 되어 있으므로, 최근 화보협회가 취급하는 보험 업무의 감소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화보협회는 시대의 변천에 맞추어 방재라는 본래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이 방면의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같은 방향 제시에 앞서 우리는 그동안 화보협회가 수행해 온 방재 기능과 업적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화보협회가 이룩한 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안전 점검·확인 점검·특별 점검 등의 실시로 화재의 예방과 손해의 확대 방지 및 위협의 경감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특히, 연소 방지 시설·화공 시설·전기 시설·경보 시설·소화 설비 및 피난 시설 같은 방재 시설에 대한 화보협회의 점검 실시후

이들 시설에 대한 꾸준한 개선이 이루어져 화재의 발생 빈도와 확산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켰음을 높이 평가한다.

둘째, 방재 시설의 개선으로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었고 또, 전반적인 손해율의 저하로 보험 회사가 화재 보험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미국의 NFPA·UL·FM 과 영국의 FPA·LPC 및 독일의 VDS·AZT 그리고 일본소방연구소 등과의 제휴로 방재 기술을 습득하고 옥외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스프링클러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적인 점검 기준의 작성과 방재 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였다.

넷째, 1986년에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로 방재시험연구소를 개설하여 소화기·경보설비·건축 전자재 등에 FILK 마크를 부여하는 품질 인증 업무도 수행함으로써 방재 성능 시험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는 점도 화보험회의 실적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방재 기능과 보험 인수 업무를 수행해온 화보험회가 지금에 와서 당면한 문제점으로 화재보험의 공동 인수 물건의 인수 중단으로 인한 수입원의 감소로 방재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 화재 위험외에도 건설공사·가스 유출·폭발·교통 사고와 같은 대형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화보험을 그대로 두어 화재 예방만을 전담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서 화보험회가 나가야 할

발전 방향을 요약해서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화보험에서는 의무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 지역으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전주 외에 울산·부천·수원·성남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계속적으로 특수 건물의 적용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입법 취지와 균형의 원칙에 부합된다.

둘째, 화보험 제정 당시에 화재 보험이 손해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보험료)이었으나, 현재에는 5%를 약간 넘을 정도로 줄어 들었다. 이는 자동차 보험 및 장기보험의 증가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폭발·건설 사고 등의 대형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20년전 국가에서 화재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여 법으로 설립한 화보험회의 역할이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보험을 개정하여 화재 위험외에 모든 위험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화보험회의 역할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각 부처별로 관장하고 있는 법률이 30여 개나 되어 매우 복잡하고 다기화되어 있는데 비하여, 해당 안전 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과 예산이 매우 부족하여 방재 활동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또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요원들이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전문화가 어려우며, 검사를 받는 기업으로서의 수많은 보고서의 작성으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요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 내용이 획일화되어 있거나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실현성이 없으며, 부조리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 헌법 제34조 6호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문민 정부는 민원에 관계되는 업무의 획기적인 간소화를 단행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공사에 따른 부조리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하여 공사의 시공·감리 업무를 과감히 관련 민간 단체에 이양한 바 있다. 이는 국가가 부조리를 없애는 한편 위험 관리 업무를 공무원이 맡아해온 비능률을 시정 한 것으로 매우 주목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국가는 화보험을 개정하여, 화재 위험뿐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의 위험을 관장하는 종합 위험 관리 기관으로 화보험회를 개편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위험 관리 기능을 다하였으면 한다. (M)